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3.3. (목) 16:30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3. 제안 이유

○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기존 [별지 서식]에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[별지 제1호서식]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 법으로 개정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'은 '개인정보 보호법'에 따라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 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은 타당함.